

규칙 및 규정 - 11 절

청구서를 발송한 후 10 일이 지나면 계정이 연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구서를 발송 후 70 일이 지나도 계정이 연체된 상태로 남아 있으면 수도 공급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발송한 후 50 일되는 시점에 예의 연체 고지서(courtesy delinquency notice)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연체 차단 7 일(영업일 기준) 이전에 최종 차단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배송 불가능한 사유로 우편을 통해 최종 차단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수도관리국 직원은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 거주지를 방문하여 눈에 띄는 장소에 차단 고지서를 남겨둡니다. 본 절에 의거 작성된 최종 차단 고지서에는 1) 고객의 이름 및 주소, 2) 계정 연체금, 3)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한 지불 또는 지불 약속 날짜, 4) 연체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연장된 시간을 신청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 5) 청구서 검토 및 이의 제기 절차에 대한 설명 및 6) 연체 서비스 청구금의 할부 상황을 비롯해 고객이 지연, 감소 또는 대체 지불 일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고객이 청구서, 청구서의 요금 또는 연체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고객은 수도관리국 직원에게 즉시 전화(530-533-4578)하거나 수도관리국(Oroville, Oro-Quincy Highway 2310 에 위치)에 직접 방문하여 문의해야 합니다.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수도관리국 직원에게 문의한 이후에도 고객이 여전히 청구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분쟁 소지가 있는 예의 연체 고지서 또는 최종 연체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5 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수도관리국 국장에게 서신으로 청구서에 대한 이의를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의 또는 최종 연체 통지 후 5 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서면으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 고객 이의 제기 권리는 소멸되고 거부됩니다. 고객은 적시에 서면 작성된 이의 제기서에 청구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이는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수도관리국 국장은 시기 적절한 방법으로 서면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이러한 수도관리국 국장의 결정은 분쟁 소지가 있는 청구서에 존재하는 모든 청구 금액과 관련된 최종 결정으로 간주됩니다. 수도관리국 국장은 이의 제기 고객으로부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수도관리국 국장이 공청회가 고객의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길 경우, 이러한 공청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도관리국 국장이 발견한 사실을 포함하여 수도관리국 국장의 결정 사항은 고객에게 서면으로 제공됩니다. 서면 이의 제기가 수도관리국 국장 앞에 보류되어 있는 동안 수도 공급 서비스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수도관리국 국장에 대한 서면 이의 제기는 고객이 감소된 요금을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입니다. 수도관리국 국장은 고객 요금 산정 시 실수가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만 자유 재량으로 이러한 요청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요금 상각은 거주지 서비스에만 해당됩니다. 수도관리국 직원에게 전달한 보충 문서와 함께 서면 작성된 요청서는 거주 고객이 서비스 요금 상각을 포함하여 지연 또는 대체 지불 일정을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입니다.

유자격 고객은 서면 요청서를 작성하고 (1) 주거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고객 서비스 주소 거주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주치의의 인증서 및 (2) 고객이 재정적으로 수도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공하는 고객을 의미합니다. 고객 가족의 특정 구성원이 현재 CalWORK, CalFresh, 총괄 지원, Medi-Cal, 보조적 소득 보장/주 생활 보조금 프로그램 또는 여성,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캘리포니아 특별 보조 영양 프로그램을 받고 있거나 고객이 가계의 연 수입을 연방 빈곤층 수준의 200% 미만으로 신고한 경우 고객은 정상적인 청구 주기 내에 수도 서비스 요금을 재정적으로 지불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은 매달 서비스에 대해 발생하는 현재 요금 외에 3 개월 동안 상각된 연체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할부 상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연체 요금 지불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상각 기간은 수도관리국 직원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3 개월을 초과할 수 있지만 12 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고객이 계약에 따라 60 일 이상 지불하지 않으면 거주지의 눈에 잘 띄는 곳에 5 일(영업일 기준) 이상 고지서가 게시되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청구의 연기 및 상각 요청은 거주지 고객만 할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가 중단되기 전에 2310 Oro-Quincy Highway, Oroville 에 위치한 South Feather Water and Power 에 전화(530- 533-4578)로 연락하여 요청해야 합니다. 예정된 차단 날짜 이전에 연체 계정 잔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수도 공급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서비스를 복원하기 전에 전체 잔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복원한 경우, 정상 청구 주기로 요금을 지불할 수 없는 고객의 수도 재연결 요금은 정상 시간 동안 재연결(“수도 공급”)을 위한 \$5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비정상 시간(“영업 시간 후”) 동안 재연결을 위한 \$150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지만 각각 \$50 및 \$150 미만인 경우 이 규칙의 파트 D 에 나와 있는 요금 체계로 명시된 금액으로 청구되어야 합니다.